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The Status and Improvement Proposal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김미영** · 김광남***

Mi Young Kim · Kwang Nam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valuate the 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and deduce facts to improve. This research is composed with a survey 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farmers joined this program, and used monitoring in selected 41 zones.

According to the surveys, this program showed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effects: village harmony, visitors increase, village income. However, It's contribute in short term objectives, but has not yet reach the ultimate goal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visitors and village income. We found some problems in the monitoring, on the agreement with farmers, range of village activities, operating AgriX program, etc.

Finally, we suggest some proposals ; 1) to redefine the aims and range for the program, 2) to clarify a village action program, 3) to strength the admission procedure, 4) to designate district based on landscape resources survey.

* 본 논문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농촌개발시험연구의 내용 일부를 포함함.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e-mail: kmy9621@ekr.or.kr

*** 공공정책연구소SNP 연구실장. e-mail: snpresearch@naver.com

주요어(key words) : 농촌경관(rural Landscape), 경관보전직불제(Direct Payment Program for Rural Landscape Conservation)

1. 서론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 여파로 자연경관 및 스카이라인 등이 파괴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경관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 농촌은 비농업적 개발수요의 증가로 농촌다움(Rurality), 농촌 어메니티(Amenity), 주변 환경 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관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작포기, 방치 및 유희화 되는 농경지, 공가 및 폐가 건축물 등의 증가로 농촌경관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 2005; 박동규 등, 2004; 안동만, 2005). 이에 따라 농촌 경관훼손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식량생산 공간이라는 농촌의 전통적 가치 외에 전통문화 및 생태계 보전, 정서함양 등과 같은 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권오상 & 윤태연, 2004;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 2005; 송미령 & 박경철, 2005; 안동만, 2005; 윤진욱 등, 2005; 임형백 & 이성우, 2004; 홍찬선, 2004; 농림수산식품부, 2005).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농촌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농촌이 제공하는 경관 서비스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 관심과 의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¹⁾에 농산어촌 경관보전에 관한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는 농산어촌 경

내용이 포함되었고, 2005년도에는 농촌경관 유지와 농경지 보존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²⁾ 사업이 도입되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준비기, 도입기, 시범 사업기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농환경계획과 일본의 중산간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농촌경관 관련 제도에 대한 소개와 국내 적용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연구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성주인, 2005; 성주인 & 박주영, 2007; 송미령 & 박경철, 2005; 정철모, 2005; 홍찬선 등, 2005). 특히 엄대호 등(2004)은 경관보전직불제 정책 시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지급대상, 지급수준, 시행방법 등을 연구 검토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채혜성 등(2006)은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고, 장효선, 김윤순 & 엄대호(2007)는 2006년도에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한 3개 마을사례를 통해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관보전직불제 시범 사업기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는 여러 편 있으나 2008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된 이후의 문제점 파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관의 보전에 관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마을단위로 농산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는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과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전국단위로 사업이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기를 거쳐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9년부터 작물위주에서 마을경관활동으로 그 목표와 범위가 확대되는 제도의 전환점을 맞아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마을 주민의 경관개선 활동을 유도하는 지원체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시범사업을 마치고 2008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어 실시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문헌고찰

2.1.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개요

농림사업지침서(2009)에 따르면,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협약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참여 농가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대상 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 계획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고 이를 시장·군수

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읍·면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의 농지(농지법 제2조 제2호)로서 도농교류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농촌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도농교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한다.

경관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로서 목본류는 제외시키고 있다. 직불금은 재배 작물의 계절 구분에 따라 동계작물은 100만원/ha, 하계작물은 170만원/ha을 지급한다.

2009년부터는 마을주민의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로 ha당 30만원을 지급하되 마을경관보전을 위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접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상지역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예산배부와 지침시달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확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에 시달함으로써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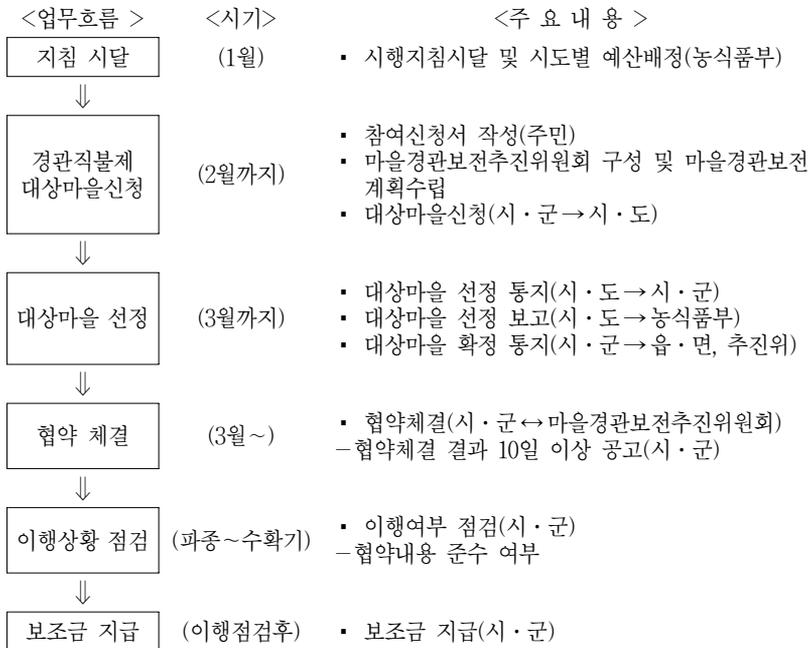
경관직불제 협약체결은 시장·군수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간에 체결하며 협약체결 결과는 10일 이상 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하여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의 평가는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 환경정비, 식재면적,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상황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경관직불제 협약 및 재배관리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인 애그릭스(Agrix)를 통하여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림사업지침서

2.2.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현황

농림사업지침서(2005, 2006, 2007, 2008, 2009)에 의하면 경관보전직불제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도에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대상작물, 지급방법 및 금액, 지원 기준, 추진체계, 마을경관보전활동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대상작물의 경우, 2005~2006년에는 소득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작물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 6종이 경관작물로 인정되었고 2007년에는 연, 자운영을 추가하여 8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7년 시범사업까지는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였고 이외의 경관작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본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경관작물을 초화류³⁾로 확대하였고 해당 품목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시범사업기(2005~2007년)에는 보리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걸보리에 대한 소득손실 차원에서 지급액을 170만원/ha으로 결정하였고 본사업기에는 동계작물의 유채 생산비를 기준으로 동계의 지급단가를 100만원/ha으로 감액시켰다. 즉, 동절기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보리를 기준으로 과거의 소득손실액 개념에서 생산비 보전개념으로 전환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사업대상지역의 요건으로 시범사업기에는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최소

3) 2008년 사업지침서에는 초화류를 꽃이 피는 초본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계경관작물은 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기준으로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11~2월)를 지나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로 규정하고, 하계작물은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를 거치지 않고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로 정의한다.

1ha이상 집단화⁴⁾되고 마을단위로는 3ha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본사업기에는 집단화 식대면적인 최소 0.5ha 이상이고 마을단위는 2ha로 규모가 완화되었다.

본사업기에는 농경지내 탐방로 설치 및 주변 환경 관리가 의무화 되었고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기준에 따라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10%를 감액하게 하고 있다.

시범사업기에는 대상지역 선정 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였으나 본사업기에는 시·도로 주체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시·도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2005년에 시범사업 470ha를 시작으로, 2008년도 5,814ha, 2009년도 16,171ha(동계 15,571, 하계 600) 등 지금까지 모두 23,725ha(14,486백만 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표 1〉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시행면적(ha)	470	470	800	5,814	16,171
-동계작물(ha)	구분 없음(시범사업)			5,312	15,571
-하계작물(ha)				502	600
예산(백만원)	600	600	1,000	2,646	9,64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경관보전직불제 개선방안(안) 내부자료

2009년도부터는 마을단위 경관을 효율적으로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제를 농가단위 경관작물 위주에서 작물 재배를 포함하는 마

4) 집단화는 필지끼리 연결하여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 하천, 수로, 임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을경관 영역으로 확대하였고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은 마을경관보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관보전직불금 외에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30만원/ha지원하여,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이행, 마을안 경관작물 재배, 마을축제 소요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즉, 경관보전직불제는 2008년까지는 경관작물 재배중심 프로그램으로 농지에 한정되어 추진되었으나 2009년도부터는 마을단위 경관보전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보완되었다.

〈표 2〉 경관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내 용	'08년	'09년
○ 프로그램 성격	재배중심 프로그램	지역(마을)단위 프로그램
○ 마을협약 영역	농지에 한정	마을단위
○ 협약주체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경관계획 내용	작물재배계획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
○ 협약단위	참여농가단위 협약	마을주민참여 협약
○ 경관보전활동	-	마을주민 전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현황 내부자료

2.3.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과 일본 등 선진국은 농촌경관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농촌경관보전활동 참여에 대해 계약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로는 영국의 ES (Environmental Stewardship) 제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농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1986년에 처음으로 환경 개념을 도입한 농환경계획(Agri-environmental scheme)을 소개하였고, 그 이후로 농촌환경 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의 직불금 정책들을 개발하여 시행

하였다(Dobbs, T. L. & Pretty, J. N., 2004). 영국은 1987년에 환경민감지역정책(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ESA), 1991년에는 전원관리인정책(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CSS)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ESA나 CSS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환경관리 기준이 지역 농가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더 완화된 기준을 보다 넓은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영국 전체 농촌의 환경보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05년에 기존의 ESA와 CSS를 통합하여 환경관리정책(Environmental Stewardship: ES)이 수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Natural England(2008, 2009)에 따르면, 환경관리제(ES)는 영국 자체에서 수립한 농촌발전 정책인 ERDP(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의 주요 실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농촌환경과 경관을 통합적 체계 속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ES의 1차적 기본 목적은 경관의 질 및 특성의 유지·강화, 역사환경 및 자연자원의 보호,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보전, 농촌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에 대한 이해, 자연자원의 보호이며 유전적(genetic) 보전, 홍수 관리를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S는 농경지의 성격 및 자격요건에 따라 기초수준관리시책, 기초유기수준관리시책, 상위수준관리지원시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조건에 대한 시책내용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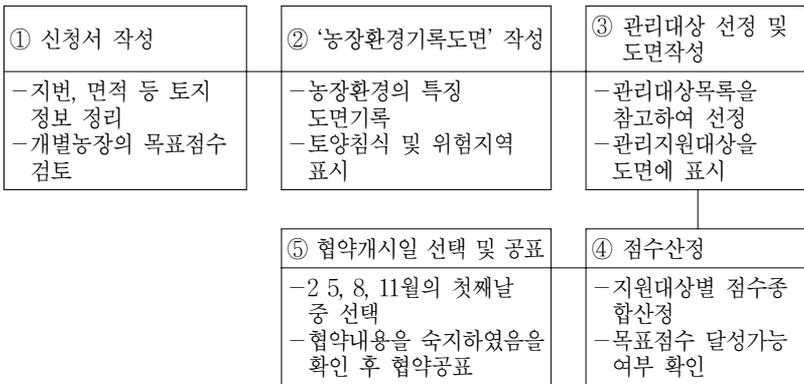
2.3.1. 기초수준관리시책(Entry Level Stewardship: ELS)

ELS는 영국 전 지역의 모든 농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농민과 토지소유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지침서에 제시된 60가지의 토지경작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신청항목에 대한 합

산 점수가 ha당 30점을 충족해야 한다.

협약기간은 최소 5년이며 보조금은 ha당 연간 £30이다. 보조금 지급은 1년 단위로 지급되고 6개월 마다 1년치 계약 금액의 1/2을 지급한다. 그리고 협약안의 시행에 따른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절차와 방법은 <그림 2>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신청 대상 토지에 대해서 목표점을 설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둘째, 농장환경의 특징을 나타내는 도면을 작성한다. 셋째, 관리대상 목록을 참고하여 관리대상 도면을 작성하고, 넷째, 목표점 달성을 위해 협약항목 중에서 자신의 토지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한다. 다섯째, 협약 개시일을 선택하고 협약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한 후 협약을 공표한다.



<그림 2> 기초수준관리시책(ELS) 신청 및 협약절차

2.3.2. 기초유기수준관리시책(Organic Entry Level Stewardship: OELS)

기초유기수준관리시책(OELS)은 기존의 유기농지원시책(OFS)을 대체하는 것으로 유기농법을 채택하고 있거나 유기농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적용하는 시책이다.

이 경우 소유토지가 유기적 혹은 전통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ha당 60점을 충족해야 한다. 유기적 토지인 경우 기본 30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은 최소 5년으로 보조금은 연간 £60/ha이다. 전통적 농장 경영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전환된 토지가 개량된 토지인 경우 2년 동안 £175/ha, 유실수원인 경우 3년 동안 £600/ha를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1년 단위로 6개월 마다 1년치 계약 금액의 1/2 지급하되 협약안의 시행에 따른 경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절차와 방법은 ELS와 비슷하다. OELS 신청 대상 토지에 대해서 목표점을 설정하고, 목표점 달성을 위해 협약항목 중에서 자신의 토지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한다. 끝으로 유기적 토지 등록증명 및 수행일정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2.3.3. 상위수준관리지원시책(Higher Level Stewardship: HLS)

상위수준관리시책(HLS)은 기존의 환경민감지역시책(ESA)에 적용되는 것처럼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환경적 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시책으로 ELS나 OELS에 가입된 토지와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은 자유이지만 각 지역의 HLS미래상을 바탕으로 환경적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농장환경관리계획(Farm Environmental Plan: FEP)⁵⁾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토지의 환경적 가치 등에 따라 다르다. 면적이 6ha 이하인 경우 연간 총 £395를 지급하는 것부터 3,000ha 이상인 경우 연간 £3,350까지 기본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민 각자의 협약에 따라 다르며 6개월 마다 지급하며 협약기간은 10년으로 5년째에 해지가 가능하다. 협약은 분기별

5) FEP는 조사자나 용역사를 통하여 작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로하며 8.1, 11.1, 2.1, 5.1에 각각 협약이 개시된다.

HLS의 지원절차와 방법은 첫째, HLS관리를 통한 토지의 긍정적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농장환경계획(FEP)을 수립하여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둘째, 농촌개발청 지도사의 상담 → Rural Development Service(RDS)의 주요 평가 → 지도사가 방문하여 향후 10년간의 협약에 대한 구체적 동의 → FEP에서 수립한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항목에 대해 협의 → 협약서 서명한다. 셋째, 등급에 관계없이 5.31, 7.31, 9.30, 12.31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원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도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도별 재배면적과 단지수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단지수에 비례한 비례층화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전국 자료의 표본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별로 표본수를 배정한 후, 단순임의추출에 따라 조사 지구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의 41개 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표 3〉 표본 지역 선정

시도	단지수	농가	재배면적(m ²)	표본수	조사 시·군
대구	1	45	160,000	—	—
대전	4	51	349,844	—	—
울산	3	44	255,202	—	—
경기	5	155	289,606	—	—
강원	9	81	900,427	1	평창
충북	11	155	558,480	—	—
충남	15	290	1,414,389	2	홍성
전북	110	1,776	20,519,403	14	고창, 김제, 완주
전남	156	3,039	25,210,523	16	영광, 순천, 화순, 강진, 장흥, 구례, 영암
경북	34	447	2,852,408	3	영주, 상주
경남	62	845	3,524,719	5	하동, 합천
제주	1	213	1,374,500	—	—
합계	411	7,141	57,409,501	41	16개시군, 41개지구

41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모두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업 참여 농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지구별로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추진위원장 등 지구별 1~2명을 대상⁶⁾으로 주민 및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5부의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주민 설문지의 경우 성실히 작성되지 않은 조사표 4부가 제외되어 결과 분석에 사용된 주민의 유효표본의 크기는 41개이다.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의 경우는 인사이드 등을 통해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6) 6개 지구에 대한 2차례의 예비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연령대가 고령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사업 참여여부를 잘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다른 사업(녹비조성사업, 푸른들가꾸기사업 등)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않은 공무원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경관보전직불제 담당 공무원의 유효 표본은 33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09년 5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일부 조사표는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조사, 전문가 회의 및 2차례의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사업 참여 농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으로는 경관보전직불제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지역 파급효과, 추진실태, 만족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등 4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조사항목으로는 지역 파급효과, 추진실태, 만족도 및 마을경관협약서, 지적도 등 3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4〉 설문지 항목

구분	조사항목
주민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일반 사항, 지역 파급효과, 추진실태, 만족도, 응답자 특성 등 42 문항
공무원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역 파급효과, 추진실태,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 지자체 지원여부, 기타 의견 ⁷⁾ 등 31 문항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분석하였다.

7) 공무원 대상으로는 폐쇄형 질문지외에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사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민 설문조사 결과

〈표 5〉에서 같이, 응답 주민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마을에서의 직책은 이장이 46.3%, 주민이 26.8%, 추진위원장이 22.0%, 작목반장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경작지 소유여부에 있어서는 응답 농가의 90.2%가 경관보전직불제 해당 농지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8%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농지의 운영형태는 자경(45.2%) 또는 자경+임차(45.2%) 형태가 주를 이루고 9.8%가 농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사업 참여 농가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3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주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직책	이장	19(46.3)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9(22.0)
	작목 반장	2(4.9)
	주민	11(26.8)
경작지소유여부	예	37(90.2)
	아니오	4(9.8)
경작지운영형태	자경	18(43.9)
	자경+임차	19(46.3)
	임차	4(9.8)
거주지와 경작지 일치여부	일치	25(61.0)
	불일치	16(39.0)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으로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및 관리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에 대한 평균값은 2회로서 응답자들의 73.2%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1~2회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6.8%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기간에 대해서는 동계가 79.7%로 가장 많았고, 하계가 17.1%, 동·하계 모두 참여한다가 1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벼농사가 끝난 후인 동계기간에 휴경지로 두는 대신 유채와 같은 동계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관작물 재배방식은 '개인이 직접 재배·관리'하는 형태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 참가자의 공동운영 방식'이 34.1%, '경관보전직불제 참가자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2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관작물을 개인별로 재배·관리하는 지구보다는 마을 공동작업을 통해 재배·관리하는 지구가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재배관리 방식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경관직불제가 농촌마을 공동체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한 이유로는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 21명(53.8%),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군의 요청'이 11명(28.2%), '친환경농비작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5명(12.2%), 사료 조달이 2명(5.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농림사업지침서에 기술한 목적과는 사뭇 다르게 참여 농가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6〉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 및 관리방식

구분		빈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횟수	1-2회	30(73.2)
	3-4회	7(17.1)
	5-6회	3(7.3)
	7회 이상	1(2.4)
	계	41(100.0)
참여 기간	동계	29(70.7)
	하계	7(17.1)
	동계+하계	5(12.2)
	계	41(100.0)
참여 이유	축제와 연계, 관광객 유치(군요청)	11(28.2)
	친환경농비작물	5(12.8)
	소득향상 기여	21(53.8)
	사료조달	2(5.1)
	계	39(100.0)
재배 및 관리방식	개인이 직접	17(41.5)
	참가자 공동 운영	10(24.4)
	개인+참가자 공동운영	14(34.1)
	계	42(100.0)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공동활동과 협약서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마을공동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35명(85.4%)으로 참여하지 않는 6명(14.6%)보다 많으며 참여하고 있는 마을 공동활동의 내용은 마을경관가꾸기 및 소품구입 21명(21.4%), 수확·건조·포장 등의 활동 19명(19.4%), 작물재배 및 시비, 체초작업 참여 18명(18.4%), 재배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 17명(17.3%), 경관작물 파종 및 식재 16명(16.3%), 회의 등 기타 7명(7.1%)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인 33명(80.5%)이 마을경관보전협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8명(19.5%)은 협약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경관보전협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12명(29.3%)으로 마을경관보전협약서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 및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급되는 '마을경관보전활동비에 대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4명(61.5%)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5명(38.5%)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도 마을경관보전활동비가 2009년 하계작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차기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지만 제도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표 7〉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공동활동 참여 및 협약서 인지

구분		빈도(%)
마을공동 활동 참여여부	참여	35(85.4)
	비참여	6(14.6)
	계	41(100.0)
마을공동 활동 내용(다중응답)	경관작물 파종 및 식재	16(16.3)
	작물재배, 시비, 채초작업	18(18.4)
	재배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	17(17.3)
	마을경관가꾸기 및 소품구입	21(21.4)
	수확·건조·포장 등의 활동	19(19.4)
	기타(회의 등)	7(7.1)
	계	98(100.0)
마을경관보전 협약서 인지여부	예	33(80.5)
	아니오	8(19.5)
	계	41(100.0)

협약서 내용 인지여부	예	29(70.7)
	아니오	12(29.3)
	합계	41(100.0)
경관마을보전활동비 활용 구상	있다	24(61.5)
	없다	15(38.5)
	계	39(100.0)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사업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마을경관개선에 기여여부와 마을주민 화합에 기여여부, 마을방문객 증가에 기여여부, 소득 증대에 기여여부의 4개 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4개 항의 성과평가 질문 항목에 대한 응답 분석결과, 효과의 크기는 마을경관 개선효과(95.2%), 마을주민화합 효과(87.8%), 방문객 증가 효과(72.5%), 소득 증대효과(65.9%)순으로 나타나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농촌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8> 경관직불제 사업의 효과

구분	매우 기여	대체로 기여	보통	대체로 기여 못함	전혀 기여 못함	합계
마을경관개선	19 (46.3)	20 (48.8)	1 (2.4)	0 (0)	1 (2.4)	41 (100.0)
마을주민화합	16 (39.0)	20 (48.8)	3 (7.3)	1 (2.4)	1 (2.4)	41 (100.0)
방문객 증가	17 (41.5)	12 (29.3)	9 (22.0)	2 (4.9)	1 (2.4)	41 (100.0)
소득 증대	8 (19.5)	19 (46.3)	6 (14.6)	4 (9.8)	4 (9.8)	41 (100.0)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1ha당 동계 100만원/ 하계 17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작다'가 9명(22%), '대체로 작은 편이다'가 17명(41.5%), '적절하다'가 14명(34.1%), '대체로 많은 편이다'가 1명(2.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1.9%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금액이 적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기계사용비가 많이 들어서'와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라는 의견이 각각 18명(43.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의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와 노동비를 지원 금액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참여여부를 질문한 결과 절대 다수인 39명(95.1%)이 '다시 참여 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원금액이 적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대다수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이유는 관광객 유치로 인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사료조달로 인한 비료절감, 농촌마을 경관에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관작물 재배 기간이 주된 영농인 모내기 시작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며 공동 활동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일부 시각도 있었다.

주민조사결과, 지원금액에는 불만족하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고 향후 참여의사도 높은 점에 비추어볼 때 목적, 경관활동의 범위, 경관작물의 분류 등 일부 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경관직불제가 추구하는 제도의 목적과 효과 달성에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의 만족도 및 향후 참여의사

구분		빈도(%)
지원금액 만족	매우 작다	9(22.0)
	대체로 작은 편이다	17(41.5)
	적절하다	14(34.1)
	대체로 많은 편이다.	1(2.4)
	계	41(100.0)
지원금액이 부족한 이유(다중응답)	기계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8(43.9)
	노동력이 많이 들어서	18(43.9)
	다음 농사에 지장을 주어서	1(2.4)
	기타	4(9.8)
	계	41(100.0)
향후 참여여부	참여 하겠다	39(95.1)
	참여하지 않겠다	2(4.9)
	계	41(100.0)

4.2.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시·군(읍·면)에서 경관보전직불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여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역 과급효과에 대해 지역소득증대, 인구 증가, 방문객유치, 지역이미지 향상 등 4개 항목의 질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경관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78.8%, 다음으로 방문객 유치가 60.7%, 지역소득증대가 60.6%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 경관보전을 통한 농촌의 이미지 향상을 계기로 지역축제 등과 연계되어 방문객 증가와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증대 등 관련 과급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 증가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3.0%에 지나지 않아 경관직불제의 효과가 아직 여기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경관직불제 사업의 효과

구분	매우 기여	기여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합계
지역소득증대	3 (9.1)	17 (51.5)	10 (30.3)	1 (3.0)	2 (6.1)	33 (100)
인구 증가	-	1 (3.0)	14 (42.4)	14 (42.4)	4 (12.1)	33 (100)
방문객유치	5 (15.2)	15 (45.5)	10 (30.3)	3 (9.1)	-	33 (100)
이미지 향상	7 (21.2)	19 (57.6)	6 (18.2)	1 (3.0)	-	33 (100)

〈표 11〉은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결과,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중앙의 지원 외에도 응답 시군의 51.5%가 자체적으로 수확 및 포장작업 지원, 축제 지원, 재배장려금 지원, 쌀 소득수확량의 50%지원 등을 통하여 제도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87.9%는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내용에 대한 홍보, 파종기기 및 관리사항과 같은 작물 재배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는 곳이 69.7%,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30.3%로 나타났다.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시군 중 1년에 1회 정도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시군 자체적으

로 년 1회~3회 정도다양하게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

구분		빈도(%)
지자체 지원여부	없다	16(48.5)
	있다	17(51.5)
	합계	33(100.0)
지자체 지원필요 여부	지원 필요	29(87.9)
	지원 불필요	3(9.1)
	기타	1(3.0)
	합계	33(100.0)
교육실시 여부	교육실시 안함	10(30.3)
	교육 실시함	23(69.7)
	합계	33(100.0)
주민교육 실시 횟수	1회	10(43.5)
	2회	7(30.4)
	3회	5(21.7)
	4회	1(4.3)
	합계	23(100.0)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이 21.2%, ‘보통’이 30.3%, ‘불만족’이 45.5%, ‘매우 불만족’이 3%로 참여 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당 공무원도 ‘작물별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와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액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구분		빈도(%)
지원금액 만족	매우 불만족하다	1(3.0)
	불만족하다	15(45.5)
	보통이다	10(30.3)
	만족한다	7(21.2)
	계	33(100.0)
불만족하는 이유	작물별 지원금액 형평성 문제	8(50.0)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	8(50.0)
	계	16(100.0)

이 밖에 개방형 질문을 통해 경관보전직불제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파악한 결과, 마을경관협약 이행상황 및 마을활동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는 경관보전직불제 행정업무절차에 대한 시행지침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홍보 및 사업 설명회 개최의 필요성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경관직불제 우수지역 방문과 재배교육 등의 연수를 통해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경관보전직불금으로 면적의 5%이내에서 마을 내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점에서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의

경관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농가와 공무원에 대한 조사결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마을경관 개선, 마을주민화합, 방문객 증가, 소득 증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관보전직불제가 마을 경관형성을 통한 농촌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지역축제 등과 연계되어 방문객 증가와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증대 등 관련 파급효과에 기여함으로써 농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농가의 조사결과에서는 경관작물 재배방식이 개인별 재배·관리보다는 마을 공동작업을 통해 재배·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재배관리 방식으로 인해 경관직불제 참여를 통해 농촌마을 공동체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된 참여이유가 대부분 경관직불제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유와 요청, 친환경농작물 사용과 사료 조달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가 당초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는 일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 제도의 목적과 방향,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관보전직불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경관직불제가 지역 이미지 향상과 방문객 증가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보다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제도가 지역인구 증가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과 개념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경관보전직불제가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작물대체 경관작물에 대한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는 제도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경관직불제가 농업경관(경작지경관, 농업생산시설경관), 자연경관(자연도입경관, 자연생태경관), 생활경관(건축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농어촌경관요소를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사업계획수립과 지침시달, 신청접수, 주민교육 등 전 과정을 통해 정확히 전달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절차에 따르면 사전에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경관활동비에 대한 사용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보다 철저한 사전 교육 및 홍보와 보다 구체적인 지침서가 필요하다.

셋째, 형평성 차원에서 경관작물 지원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축산사료로 활용되는 경관작물의 경우와 순수 경관작물사이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현행 분류방식인 동계, 하계의 구분보다는 경관 효과인 꽃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작물을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이에 따른 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지식과 정보교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새로운 경관작물 도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참여농가가 작물재배 및 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가를 위한 경관작물 재배관리에 관한 매뉴얼 공급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등을 통해 지식정보의 습득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영국의 농환경계획인 환경관리제(Environmental stewardship)의 경우처럼 농촌 환경과 경관자원에 대한 사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를 지역관광 및 축제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등 기술적인 방법론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된 경관자원 목록과 도면은 일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경관직불제 지구 선정에서 우선순위 결정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하여 농촌경관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다.

■ 참고 문헌 ■

- 권오상, & 윤태연. (2004). 논농업의 경관가치평가, *농업경제연구*, 45(2), 235-261.
-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 박소현. (2005).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심리적·경제적 가치와 환경정책*.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종철. (2007).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농촌자원과 생활*, 봄호 68-77.
- 농림수산식품부. (2005a). 농촌경관 전문가 Workshop 자료집.
- 농림수산식품부. (2005b). 농림사업지침서.
- 농림수산식품부. (2006). 농림사업지침서.
- 농림수산식품부. (2007a). 농림사업지침서.
- 농림수산식품부. (2007b).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한 경관작물 재배관리 매뉴얼 -유채, 메밀, 자운영.
- 농림수산식품부. (2008a).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추진방안 세미나.
- 농림수산식품부. (2008b). 농어촌경관계획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
- 농림수산식품부. (2008c). 농림사업지침서.
-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림사업지침서.
-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김배성, & 박경철. (2004).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2005).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관리실태와 정책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 박주영. (2007). *농촌경관 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 박경철. (2005).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동향과 시사점, *농촌경제*, 28(3), 121-137.
- 안동만. (2005). *어메니티 창조를 위한 농촌경관 관리. 농촌자원과 생활*. 특집: 지역개발과 어메니티 자원 65-71.
- 안동만, 신수안, 채혜성, 이지영, 이관용, 최옥현, et al. (2008). *농촌경관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관리기준 및 운용에 대한 연구: 경관보전직불제 대상확대를 중심으로*. 수원: 농촌진흥청.

- 엄대호 심완보, 윤진옥, 이충선, 홍찬선, & 유상오. (2004). 농촌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방안 연구. 안산: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엄대호 윤진옥, 양선주, 임승빈, 이동근, & 주신하. (2006).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방안 연구, 안산: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임형백 & 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경관 기능 유지에 대한 가치평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3), 25-48.
- 윤진옥, 홍찬선, 엄대호, 박운호, 최분규, 정기호 et al.(2005).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안산: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장효선 · 김은순 · 엄대호. (2007).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의 시행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봉화군, 청원군, 홍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3(4). 69-77.
- 정철모. (2005). 경관농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경관보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3). 191-210.
- 주신하. (2008).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 *농촌계획* 14(4). 77-86.
- 채혜성, & 안동만. (2008).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 연구: 영국의 환경관리제(Environmental Stewardship)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14(2). 65-75.
- 채혜성, 신수안, 이지영, 이관용, 최옥현, 조정윤, et al.(2006).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농촌계획* 12(4). 115-123.
- 홍찬선. (2004). 경관가치 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연구. *농공기술* 9월호. 20-21.
- 農林水産省. (2009). 景観・自然環境保全形成支援事業のうち農村景観・自然環境保全再生パイロット事業公募要領.
- Dobbs, T. L., & Pretty J. N. (2004). Agri-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s and Multifunctionality,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26(2). 220-237.
- Natural England. (2008). *Natural England framework for Science, Research and Evidence*, Natural England Research Report 011.
- Natural England. (2009a). *Evaluation of management plan options in Environmental Stewardship*. Natural England Commissioned Report 007.
- Natural England. (2009b). *Look after your uplands with Environmental Stewardship*.
- Natural England. (2008). *Entry Level Stewardship Handbook*. Second edition-October 2008.

논문투고일: 2009. 10. 25

1차수정일: 2009. 11. 23

2차수정일: 2009. 12. 10

게재확정일: 2009. 12. 18